

(第12回-建設第1次)

□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94.1.1)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의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에 따른 추가 전출분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됨에 따른 교원 인건비 추가분 확보와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개정('94.3.16)으로 인하여 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및 일비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
- 정부지침에 따른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경비에 필요한 소요재원 890억 2천만원 마련을 위하여 기정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 그중 도로국 소관 경정예산은 건설사업비에서 2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금년도 도로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당초 예산 6,925억 8천 48만 6천원 중 금번 28억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6,897억 8천 48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보다 약 0.4% 감소된 규모입니다.
- 그 경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토지매입비가 36억원이었으나 공사 구간중 영등포구치소 및 교도소구간의 계획변경으로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 또한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

업은 '94.7.20 준공됨에 따라 채무액 40억원 중 32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과 같이 道路局所管 追加更正豫算 編成案을 간략하게 說明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教育廳 支援事業이 불가피한 措置임을 널리 諒解하시어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禹仲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秋在燁 專門委員 秋在燁입니다. 1994年度 道路局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정기회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설사업비 예산 총 692,580,486천원 중 0.4%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삭감하여 689,780,486천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89,019,260천원 중 3%에 해당하는 28억원이 도로국 소관 분야에서 삭감 부분임.

○ 세부조정내역은 건설사업비 중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서 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사업비 경정(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율	경정사유
계	4,800,000	7,600,000	△2,800,000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사업	1,600,000	3,600,000	△2,000,000		도로개설구간내 영등포 교도소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사업	3,200,000	4,000,000	△ 800,000		'93채무원인행위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의 시교육청의 전출금 조정 및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교원 인건비 추가확보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한 시의회 회기일수 연장 및 일반비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 사업비에서 보상면적 감소에 따른 보상집행잔액 20억원을 삭감하고 시흥대로~보라매공원간 도로개설 사업비에서 '93채무원인행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8억원을 삭감한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생각됨.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禹仲 다음은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鍾爽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李鍾爽委員 道路局長님, 一問一答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이니까.
 ○委員長 金禹仲 道路局長, 發言臺에 서시도록 하십시오.
 ○李鍾爽委員 우선 豫算編成은 追加更正豫算을 前提로 해서 豫算編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追加更正이라는 것은 불가피할 때 天災地變이나 기타 그야말로 人災가 아닌 天災로 해서 이루어졌을 적에 追加更正豫算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追加更正豫算案 制度가 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追加更正豫算案을 檢討해 본 結果, 이것은 追更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먼저 江西路, 京仁路間 道路開設事業이 당초 土地買入價가 36億원이었는데 여기서 20億원을 更正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서울시 行政의 計劃性 없는 行政이 빚어낸 하나의 발로가 아니냐, 그리고 이 都市計劃變更이 어떻게

變更이 되어서 어떻게 감소되었느냐는 說明 없이 덮어놓고 都市計劃變更에 의해서 20億원이 削減되었다,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훑는 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都市計劃이 어떻게 變更되었느냐, 그렇다면 都市計劃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無責任하고 그냥 안일하고 無計劃한 計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對答 좀 해 주세요.
 ○道路局長 金震培 당초 豫算에서는 地方教育 財政交付金法 第11條第2項의 改正이 今年度 1월에 豫算案 承認 후에
 ○李鍾爽委員 여기서 담배消費稅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따질 일은 道路局所管입니다. 담배消費稅나 이것은 豫決에서 따질 일이고, 該當部署에서 따질 일이지 구구하게 담배消費稅나 뭐니 따질 것이 없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計劃이 變更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計劃의 行政이에요? 그리고 왜 永登浦矯導所區間의 都市計劃變更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이것도 說明을 해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道路局長 金震培 알겠습니다.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江西路, 京仁路間 道路開設工事は 幅이 20m고 延長이 760m 區間 中에 永登浦矯導所가 約 180m, 永登浦拘置所가 230m 등 法務部 所有로 國有地 區間이 約 410m가 抵觸이 되어 있습니다. 410m가 抵觸되는 工事로서 그 抵觸되는 土地가 法務部 所有로 되어서 5筆地에 2,898㎡에 대해서 우리가 收用하고자 했으나 法務部側의 반대로 收用이 불가했으며, 拘置所 및 矯導所의 防護關係上 필요한 巡察路를 확보해야 한다는 法務部側의 요청에 의해서 計劃變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爽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 都市計劃을 새움에 있어 우리